

가가호호 아이돌셋 이하호호 희망한국



보건복지가족부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, 대한한 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
대한한방병원협회, 대한치과병원협회

(경유)

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협조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부(의료자원과)는 '비급여 비용 등의 고지·게시 등'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을 공포('10.1.29) 한 바 있습니다.

3. 다만,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3개월(~ '10.4.30)의 계도·정착기간을 두고자 합니다.

4. 계도·정착기간 이후('10. 5. 1. ~)에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이오니, 각 협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에 대한 안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 끝.



보건복지가족부



주무관	안상현	협조사무관	박창규	의료자원과장	신각 02/03
협조사					정윤순
시행	의료자원과-874	(2010. 02. 04.)	접수		
우	110-793	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과	/	http://www.mw.go.kr	
전화	02-2023-7304	전송 02-2023-7333	/	ash2300@korea.kr	/ 비공개(5)
				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	